

루리 위키 > 가이드 · 고민 해결

홈 > 고민 해결

루리의 줌줌 · 응모·실무 가이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누가 지나

루리의 줌줌이 정리한 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누가 지나

루리

유출의 일차 책임은 개인정보를 맡아 관리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처분의 강도와 예방 투자를 함께 높이되 이용자와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해야 한다.

유출의 일차 책임은 개인정보를 맡아 관리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처분의 강도와 예방 투자를 함께 높이되 이용자와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해야 한다.

1 주장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한 사업자가 져야 한다. 이용자는 정보를 맡긴 쪽이고 사업자는 맡아 관리하는 쪽이다. 관리 능력은 사업자에게 있고,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는 쪽도 사업자다. 다만 책임이 사업자에게 집중된다고 해서 정부의 감독 책임과 이용자의 주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사업자 책임을 중심에 두되, 처분이 실제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근거

가장 최근의 공식 사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6월 10일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쿠팡 제재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위원회는 쿠팡에 과징금 총 6,246억 8,1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 냈다. 쿠팡폴필먼트서비스에는 과징금 총 2억 4,800만 원이 부과됐다(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57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578)).

이 사례가 보여 주는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유출의 원인이 이용자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판단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책임의 크기가 과징금이라는 금전적 처분으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위원회 결정문은 위원회 누리집에서 공개되고 있어, 처분의 근거와 판단 과정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https://pipc.go.kr/np/default/agenda.do?mCode=E030010000> (<https://pipc.go.kr/np/default/agenda.do?mCode=E030010000>)).

또한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출 예방조치 당부,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안내 같은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074&mCode=C020010000>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074&mCode=C020010000>)). 사후 처분과 사전 안내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은 사후에만 묻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관리 수준에서 시작된다.

3 반론과 재반박

첫 번째 반론은 사업자도 해킹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공격 기술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침입을 막기는 불가능하며, 과도한 처벌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처분의 기준은 유출 사실 자체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했는지다. 위 사례에서 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도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같은 기본적 관리 체계였다. 안전조치를 다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구별해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에 맞다.

두 번째 반론은 과징금이 매출에 연동되어 정보의 민감도나 피해의 크기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지적은 제도 설계의 문제로서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 과징금 산정 방식과 상한은 법령상 규정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에서 공식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수치를 단정하지 않는다. 처분이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소송 등으로 결정이 바뀔 수 있는지도 별개의 문제다. 이번 처분은 이의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으로 볼 수 없다.

세 번째 반론은 이용자 책임이다. 비밀번호 관리나 동의 확인 같은 이용자의 주의를 필요하다. 하지만 대규모 유출은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서버와 시스템에서 일어나므로, 이용자에게 책임의 중심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4 결론

반복되는 유출의 일차 책임은 개인정보를 맡아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있다. 정부는 처분을 통해 기준을 세우고 예방을 돕는 역할을, 이용자는 기본적인 주의를 다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요한 것은 처분의 숫자가 아니라 같은 유형의 유출이 되풀이되지 않는지다. 앞으로는 처분의 투명한 공개, 사업자의 안전조치 투자, 피해 이용자 구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확정된 결정과 법원의 결론을 기다려 평가해야 한다.

5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정책브리핑, 「쿠팡(주), 역대 최대 과징금 총 6246억 8100만 원 부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57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57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위원회 결정문: <https://pipc.go.kr/np/default/agenda.do?mCode=E030010000> (<https://pipc.go.kr/np/default/agenda.do?mCode=E03001000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목록: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074&mCode=C020010000>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074&mCode=C02001000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쿠팡에 15억 9,945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2024년 의결 건):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0808>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0808>)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링크 복사

네이버 블로그

밴드

X

Facebook

💬 다른 고민 보기 · 🌟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

6 마감 임박 공모전

출처: 루리의 줍줍(sungprofile.cloud) ·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